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임대문의 **1600-1004**

LH 홈페이지 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2021. 06
www.lh.or.kr

검색창에 **서울잠실 행복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

잠 실 에 서 **시 작** 하 는

HAPPY LIFE

2호선 삼성역 **한정거장**

잠실종합운동장역 **한걸음**

인근의 **롯데월드타워, 코엑스**

아시아공원, 잠실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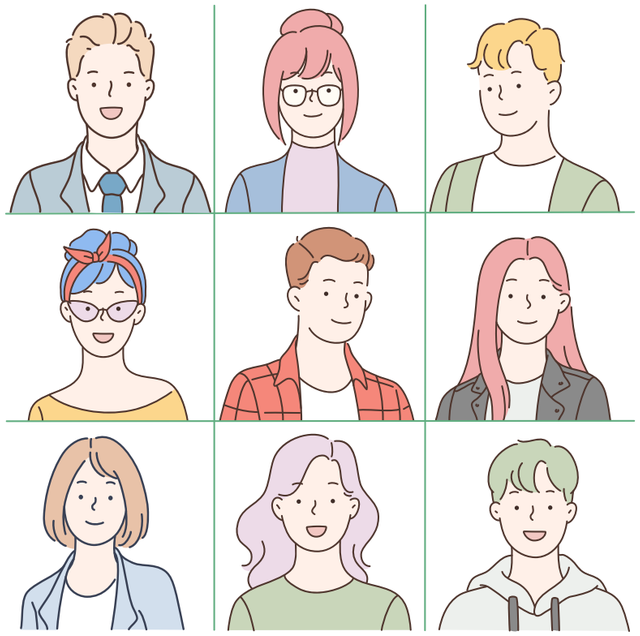

Seoul Jamsil Happy House

서울잠실 행복주택

[전용 14㎡ / 26㎡] **총 40세대**

LH

Seoul Jamsil **HAPPY HOUSING**

편리한 생활! 저렴한 주거비!

행복한 일상의 첫 걸음! 서울잠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산업단지근로자 ·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 기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됩니다.
-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합니다.

가까운 직장/학교 · 다양한 편의시설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 저렴한 주거비

서울잠실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입주자격 안내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1인 : 120% / 가구원수 2인 : 110% 이하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것 * 가구원수 1인 : 120% / 가구원수 2인 : 110% 이하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HAPPY LOCATION

교통망도

잠실종합운동장역 한걸음, 삼성역 한정거장과 인근의 롯데월드타워 등!

교통 · 생활 · 문화의 중심지 잠실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지하철, 백화점, 학교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잠실에
새로운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주소만 보아도 감동!

더블 역세권이 발 앞에

- 지하철 2호선 · 9호선 종합운동장역, 2호선 잠실새내역
-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심과 전국으로 통하는 도로망

잠실과 강남이 코 앞에

- 인근의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과 역세권의 다양한 편의시설
- 스타필드 강남, 코엑스, 현대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문화와 자연이 눈 앞에

- 인근에 아시아 공원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과 잠실한강공원 위치
-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풍부한 여가 · 문화시설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

※ 상기 교통망도 및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교통망도 및 이미지는 관계기관의 인 · 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교통망도 및 이미지는 향후 개발 후의 이미지이며 해당 기관의 개발 계획 · 실시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HAPPY LANDSCAPE

단지조감도/단지배치도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 입주민 편의시설 등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역동적인 젊음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과 실용성을 생각한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등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실속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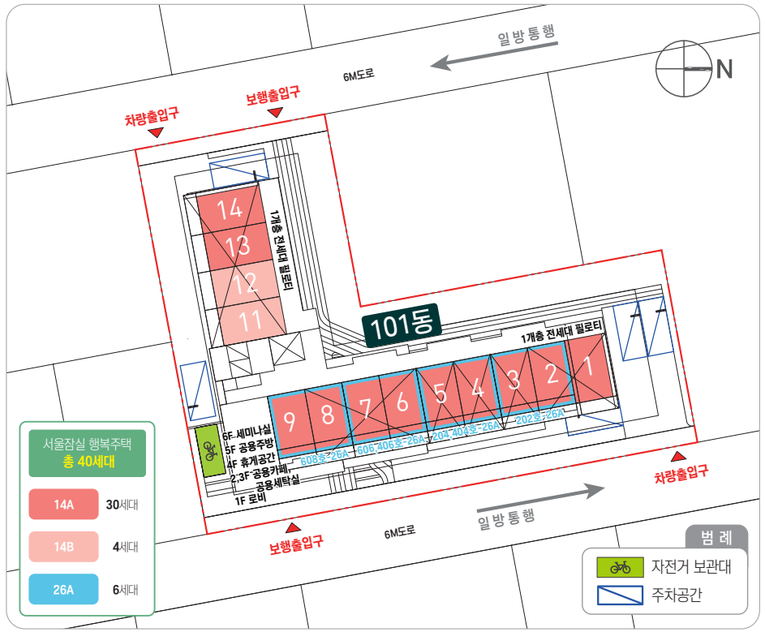

이름만 들어도 행복!

실용적이고 편리한 입주민 전용시설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용세탁실, 공용주방 등 설치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

내일을 위한 휴식과 사색, 토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휴게공간 제공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관계기관의 인 · 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향후 개발 후의 이미지이며 해당 기관의 개발 계획 · 실시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VOICEYE
voiceye.com

14A

30세대

14B

[주거약자용] 4세대

주 택 면 적	
주 거 전 용	14.9900㎡
주 거 공 용	13.2916㎡
기 타 공 용	5.9156㎡
계 약 면 적	**34.1972㎡**

실 별 면 적	
거실 / 침실	9.34㎡
주방 / 식당	2.34㎡
욕 실	0.95㎡
현 관	2.36㎡
합 계	**14.99㎡**

발 코 니 면 적	
발 코 니 계	3.7349㎡

14B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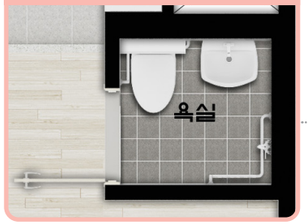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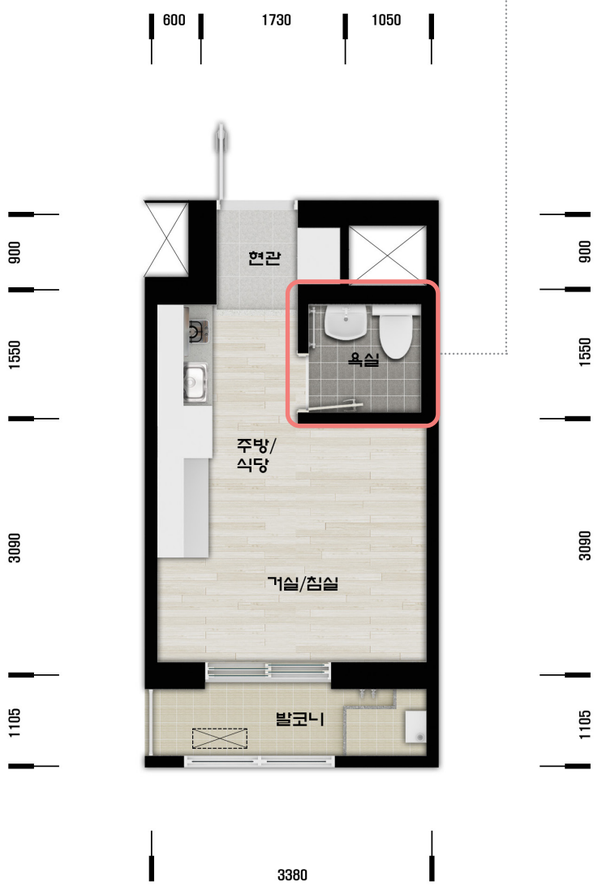

14B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 장애인 손잡이(욕실)
- 비상연락장치(욕실)
- 천정형 야간센서등(욕실 입구)

14B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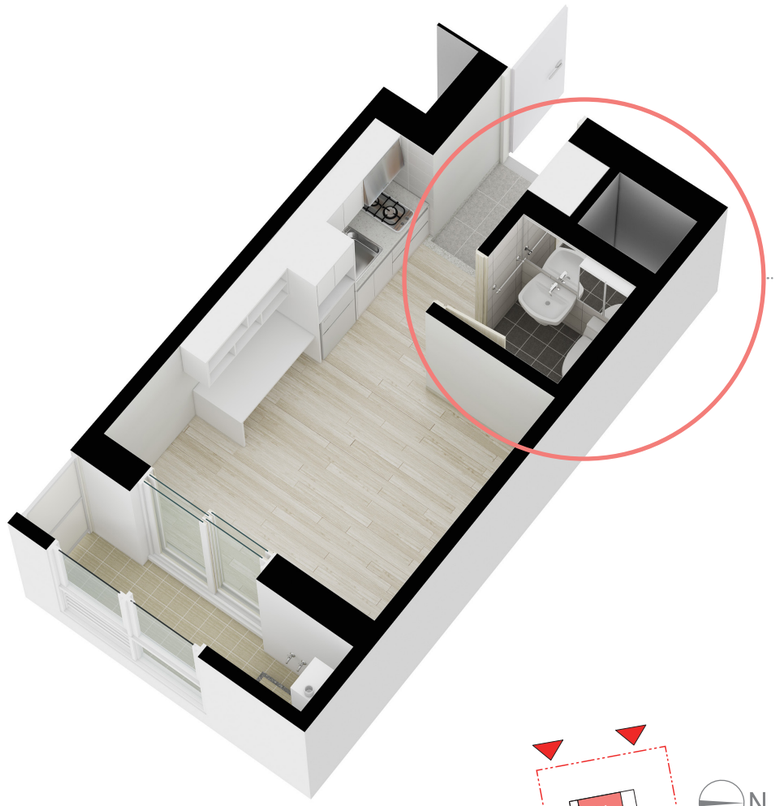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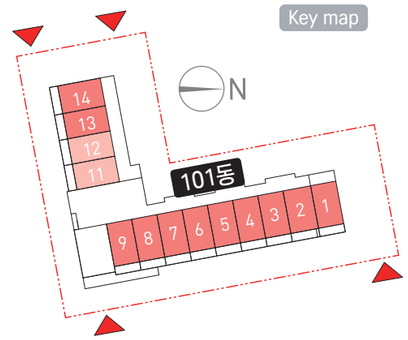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A

6 세대

주 택 면 적	
주 거 전 용	26.2500㎡
주 거 공 용	23.2758㎡
기 타 공 용	10.3593㎡
계 약 면 적	**59.8851㎡**

실 별 면 적	
침 실 1	4.24㎡
침 실 2	7.14㎡
주 방 / 식 당	10.59㎡
세 탁 실	0.83㎡
욕 실	2.02㎡
현 관	1.43㎡
합 계	**26.25㎡**

발 코 니 면 적	
발 코 니 계	6.5234㎡

※ 발코니 면적에는 침실1 확장 부분 면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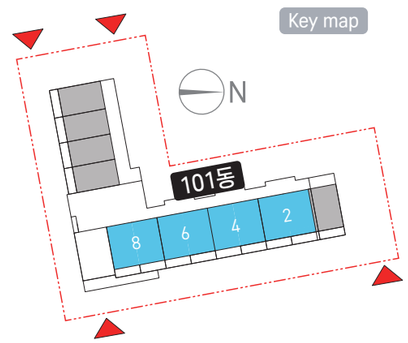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 동 · 호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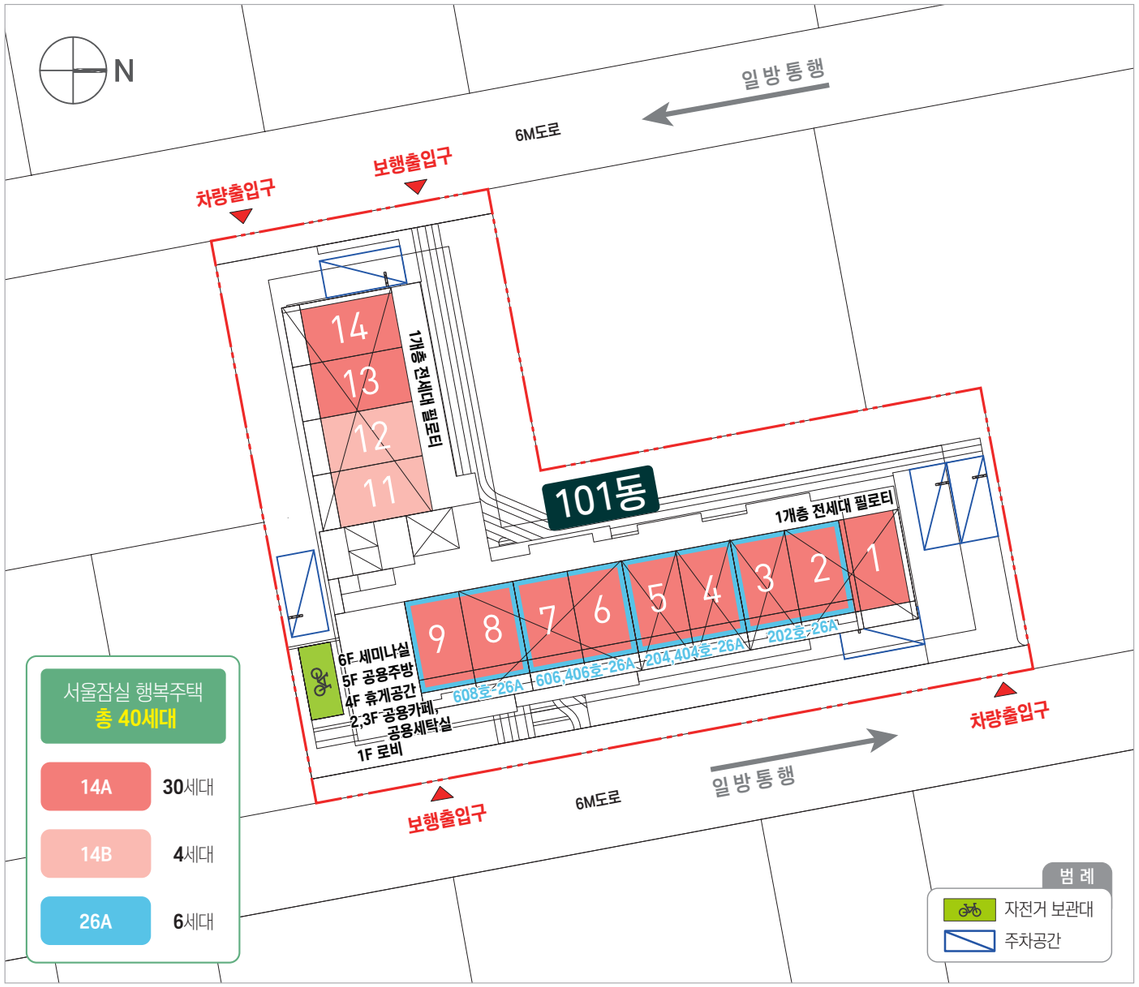

6F		602	603	604	605	606		608		세미나실				
5F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공용주방				
4F		402	403	404		406		408	409	휴게공간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공용 세탁실	공용 카페		311	312	313	314
2F	201	202		204		206	207				211	212	213	214
1F	저수조		펌프실	방재실	MDF	필로티			로비		필로티			

101동

※ 상기 단지배치도 및 동호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 시설 내역

품목			14A	14B(주거약자)	26A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식 도어록	레버식 도어록	레버식 도어록
	신발장	문짝	HPL	HPL	HPL
		내부	HPL/LPL	HPL/LPL	HPL/LPL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현관등		센서등(LED)	센서등(LED)	센서등(LED)
거실/침실 (14A/14B)	바닥재		륨카펫	륨카펫	-
	벽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
	천장		발포도배지	발포도배지	-
	비디오폰		7인치 칼라LCD	7인치 칼라LCD	-
	거실등		LED	LED	-
침실1/침실2 (26A)	바닥재		-	-	륨카펫
	벽		-	-	실크도배지
	천장		-	-	발포도배지
	침실등		-	-	LED
주방식당	주방가구	문짝	HPL	HPL	HPL
		상판	인조대리석(BMC)	인조대리석(BMC)	인조대리석(BMC)
	개수대		언더씽크용	언더씽크용	언더씽크용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디럭스형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측면개폐형	측면개폐형	측면개폐형
	가스쿡탑		2구형	2구형	2구형
	냉장고		130~160L	130~160L	130~160L
	바닥재		륨카펫	륨카펫	륨카펫
	주방벽		도기질타일/실크도배지	도기질타일/실크도배지	도기질타일/실크도배지
	비디오폰		-	-	7인치 칼라LCD
	주방등		LED	LED	LED
욕실	세면기		백색 원형	백색 원형	백색 원형
	양변기		투피스형	투피스형	투피스형
	세면기수전		싱글레버/샤워겸용	싱글레버/샤워겸용	싱글레버/샤워겸용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욕실타입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욕실등		LED	LED	LED
	비상연락장치		-	설치	-
발코니	벽/천장		수성도료	수성도료	수성도료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세탁기수전		냉수 2구형 / 온수 1구형 가로꼭지	냉수 2구형 / 온수 1구형 가로꼭지	-
	발코니등		LED	LED	LED
세탁실	세탁실등		-	-	LED
	세탁기수전		-	-	냉수/온수 각 1구형 가로꼭지
기타/정보통신	위성TV수신시스템		설치	설치	설치
	정보통신		1등급	1등급	1등급
기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설치	설치
	천정형 야간센서등		-	LED	-

※ 상기 마감재 내역은 자재의 품절, 품귀, 시공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서울잠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6.24.]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7-2, 197-6 일원 행복주택 4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1.06.25.~2002.06.24.)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1956.06.24. 이전 출생)의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LH 서울지역본부)을 받습니다. 단 현장방문신청 시 장시간 접수대기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현장) (PC · 모바일) '21.07.05.(월) ~07.09.(금)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1.07.16.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1.07.19.~07.22. → 무주택 · 소득 · 자산 조사 → 무주택 · 소득 · 자산소명처리 → 당첨자 발표 '21.10.15. → 계약체결 (전자) '21.10.27.~10.29.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서울잠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1-000460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입주예정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14A	대학생	6	13	14.99	13.2916	5.9156	0	34.1972	59,840	2,992	56,848	189,490	(+)22,000	81,840	79,490	6	'22.2
	청년(소득無)	7											(-)52,000	7,840	297,820		
	청년(소득有)								63,360	3,168	60,192	200,640	(+)24,000	87,360	80,640		
													(-)55,000	8,360	315,220		
	주거급여수급자	2	2						52,800	2,640	50,160	167,200	(+)20,000	72,800	67,200	20	
													(-)46,000	6,800	263,030		
14B	고령자 (주거약자용)	2	2	14.99	13.2916	5.9156	0	34.1972	66,880	3,344	63,536	211,780	(+)25,000	91,880	86,780		
													(-)58,000	8,880	332,610		
26A	청년(소득無)	3	3	26.25	23.2758	10.3593	0	59.8851	110,840	5,542	105,298	350,990	(+)42,000	152,840	140,990	6	
													(-)97,000	13,840	553,070		
	청년(소득有)								117,360	5,868	111,492	371,640	(+)44,000	161,360	151,640		
													(-)103,000	14,360	586,220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4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4A 대학생 ·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4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경비소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4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 [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가 설치되며 26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냉장고, 가스쿡탑(2구)]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송파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6.25.~2002.06.24.**)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589,9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구분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공급 / 일반공급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 '21.07.05.(월) 10:00 ~ '21.07.09.(금) 17:00 ※ 24시간(토,일요일 포함)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방문접수 '21.07.05.(월)~'21.07.09.(금) 10:00~16:00(점심시간 제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가능	'21.07.16.(금)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21.07.19.(월)~ '21.07.22.(목) [등기우편 접수주소] (06100)서울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잠실 행복주택" 담당자 앞 ※'21.7.22(목) 소인분까지 유효	'21.10.15.(금)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만 가능 '21.10.27.(수)10:00~ 10.29.(금)17:00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현장방문계약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21.10.29.(금) 10:00~16:00(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 장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청약접수는** PC[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임대공급운영부) 입니다.
* **만 65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를 원하는 경우** 고령자 계층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 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합니다.
*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VOICEYE voiceye.com

■ 인터넷(PC) 및 현장방문 신청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방문신청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
* 청약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공사양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류 ※ **5.신청서류 참고**
* 접수기간 : **'21.07.05.(월)~07.09.(금)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 현장방문신청 문의전화 : ☎ 02-3416-3887 (청약신청 접수시기에만 운영)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1.07.16.(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1.07.19.(월)~'21.07.22.(목)]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07.2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잠실 행복주택" 담당자 앞

○ 현장방문 신청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 **현장방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지구 선택 → 2단계 주택형 선택 → 3단계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5단계 서약서 작성 → 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07.05.(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1.07.09.(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07.05.(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1.07.09.(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 · 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6.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 ·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신청자 포함)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발급일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우선공급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 ·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이상 ~ 만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청년 계층	해당자만 제출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복무확인서(복무중)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병무청, 민원24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1.10.15.(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 · 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1.10.27.(수) 10:00 ~ '21.10.29.(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 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전자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고객) ➡ 【1차 SMS】 계약서 전송안내 (LH→고객) ➡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전자계약→고객) ➡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 출력, 저장 가능

○ **현장방문계약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해당**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1.10.29.(금)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 · 군 · 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 · 항공기	- 선박 :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여건** •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3호, 2018.11.22)로 승인된 사업임 • 이 주택의 건축·토목·기계 시공업체는 ㈜서한, 일신건설㈜, ㈜유인엔지니어링임 • 전기공사 시공업체는 ㈜진일전력, 통신공사는 ㈜화산에스티아이임 • 지구 북서측에 종합운동장역(지하철 2·9호선)과 북동측에 잠실새내역(지하철 2호선)이 위치함 • 지구 500m내 버스정류장 12개소(약 20개노선)가 위치함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잠실 행복주택'의 아파트명은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500m내 식당 등 상업지역이 위치하여 소음 및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 단지 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 입면, 시설물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6층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세대의 외부 창호가 분할창(하부 FIX창/그릴창, 상부 미서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다리차 이용시 창호 파손이 우려됨) • 주민공동시설(공용세탁실, 공용주방 등)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인접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음 • 비상용발전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발전기 운전 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근접세대는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장애인주차(1대) 포함 총 9대이며, 2개 구간(6대/3대)으로 차량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음.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출입 동선에 따라 일부 주차 구간 주차 난이도가 높을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공용)은 1층에 설치 예정임 • 2층에 위치한 공용세탁실은 코인세탁기로 유료로 운영됨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동 주변에 동지하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본 단지의 세대내 일부 자재(PL창호, 가구류 등)는 중소기업 자재를 사용함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층의 복도는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외부 디자인 요소(5·6층 돌출)에 따라 복도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 및 크기가 층별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발코니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비상탈출구(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임 • 14A, 14B형의 경우 우수입상관이 발코니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책장, 냉장고장, 주방가구)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문틀, 문짝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공용세탁실, 공용주방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단, 공용세탁실에는 세탁기·건조기 설치, 공용주방에는 주방가구 설치)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 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에 따라 실외기는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온풍이 발생할 수 있음. • 14A, 14B형 세탁기 설치는 발코니 내에 가능하며 세탁기 설치 공간은 안목치수 560mm이내(시공과정상 다소 차이 발생 가능)로 규격에 따라 설치 불가한 제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사전방문 시 실측을 권장함 • 26A형 세탁기 설치는 세대 내 별도 세탁실에 가능하며, 세탁실의 폭은 안목치수 800mm이내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 발생 가능)로 규격에 따라 설치 불가한 제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사전방문 시 실측을 권장함 • 에어컨 설치는 에어컨 배관구 위치를 확인(14A·14B는 발코니 외부에서 배관구 확인 가능, 26A는 침실2 내부 벽면에서 배관구 확인 가능)하여 해당 위치에 설치하길 권장하며, 설치 전 도배지 등을 배관구 모양에 맞게 일부 제거한 뒤 설치가 가능함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와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절대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 중이거나 제공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ㄴ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적용
수변전 설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함)	적용
	외벽(간접면함)	적용
	창호(직접면함)	적용
	창호(간접면함)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서울잠실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건축·토목 : ㈜서한 (502-81-16195), 일신건설㈜ - 기계 : ㈜유인엔지니어링 - 전기 : ㈜진일전력 - 통신 : ㈜화산에스티아이	-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하시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8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3431-1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 ·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릿 배부처	• LH 서울지역본부 마이홈센터(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1층) • LH 남부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문의처 약도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254번지) • 주 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오시는 길 - 지하철 :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9호선 선정릉역 1번출구(강남구청역 방향) - 지선버스 : 3426, 4412, 3414 - 간선버스 : 242, 401, 351, 472 - 마을버스 : 강남08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하셔야 되고, 체온측정 및 손독제 사용에 협조해주셔야 됩니다. ※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24.

LH 서울지역본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